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4월 8일

나.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4.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 현행화 (안 제2조)
-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안 제4조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융자대출 이율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의2제2호의 소상공인의 정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시행 2021.2.5.)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2.5.)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
 -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 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게 하였음. 기금은 그 사용이 용도에 한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바 기금의 용도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는 타당한 개정임.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금 융자 대출이율을 면제하는 것은 한시적으로나마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에서는 지원 대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
------------	-----

발의년월일: 2021년 4월 8일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 현행화(안 제2조의2제2호)
- 나.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안 제4조제1항제2호)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 나. 협 의 : 일자리경제과
- 다. 입법예고 : 2021. 4. 8. ~ 4.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 9. (생략)	제2조의2(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 3. ~ 9.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②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현행과 같음) 2. <u>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u>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